
구미상공회의소 수출 바우처 -수출 물류비 지원사업-

2025. 7.

구미상공회의소
기업지원팀

□ 사업 목적

- 국제 물류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기업의 물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
- 이에 따라, 회원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, 수출 지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, 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②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□ 사업 개요

- (사 업 명) [수출 바우처]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
- (사업기간) 2025. 7. 21(월) ~ 8. 8(금) *선착순 접수
- (사업규모) 20백만원 (업체당 최대 3백만원 지원)
- (지원대상) 본 회의소 회원사
(연 회비 납부액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
- (지원금액)

연회비 납부액	지 원 금 액 (박람회/통번역/물류비 통합)	지원한도
~ 50만원	30만원	1건당 실제 발생비용의 최대 50%
50만원 초과 ~ 100만원 이하	50만원	
100만원 초과 ~ 300만원 이하	100만원	
300만원 초과 ~ 500만원 이하	200만원	
500만원 ~	300만원	

*상기 지원 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지원총액 범위 내에서 중복신청 가능

*박람회 참가 / 통·번역 지원 / 수출물류비 지원 통합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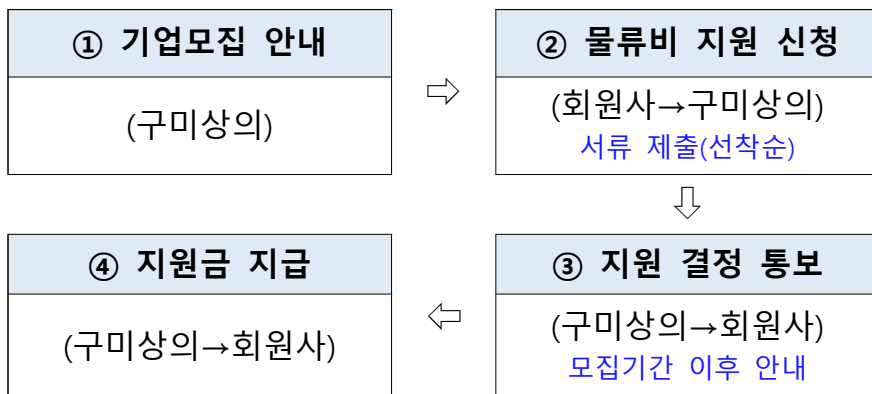
○ (지원내용)

지원항목		세부내용	증빙서류
국내 운송비		국내 발생 수출운임 (컨테이너 등)	수출신고필증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, 이체확인증
국제 운송비		해상 및 항공 운임	수출신고필증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, 이체확인증
창고비	보관료	해외 창고 보관료	수출신고필증, 인보이스, 이체확인증
	작업료	입고료 및 하차료, 하역료 작업료 등 해외발생 비용	수출신고필증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, 이체확인증
수출국 내륙 운송비		해외 내륙 운송료	수출신고필증, 인보이스, 이체확인증
견본품 및 수출관련 서류 운송비		EMS, DHL, FEDEX 등 특송업체의 견본품 및 무역서류 운송료	수출신고필증, 인보이스,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등

○ (지원제외)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

- ① 동일한 수출건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
- ② 본 회의소 회비가 미납된 경우 (***임의회원인 경우 직전 2기 이상 회비 납부 필요**)
- ③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
- ④ 기타 본 사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지원 절차



<수출 물류비 지원>

제출 서류 : 신청서 및 제출서류, 지원 항목별 증빙서류
 지출증빙자료(카드 영수증, 이체확인증)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

□ 신청서 접수 및 방법

- (접수기간) 2025. 7. 21(월) ~ 8. 8(금) *선착순 접수
- (접수방법)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(kimsw1@korcham.net)

□ 기타 유의사항

- (제재조치)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,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-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- 사업비의 과건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- 지원사업 신청, 완료보고서,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금품·향응 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→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) |
|---|

- (기 타)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·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구미상공회의소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.
 -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.
 -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·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(문 의) 구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김수원 주임
 - 전화번호 : 070-4138-8657 // E-MAIL : kimsw1@korcham.net

(붙임 1)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문.

(붙임 2)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 1부. 끝.